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 안 번 호 2379 2018년 4월 10일 교 육 위 원 회

# Ⅰ. 심사경과

1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18년 2월 12일, 박마루 의원 외 16명

2. 회부일자 : 2018년 2월 19일

3. 상정일자 : 제280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(2018년 4월 10일 상정·원안가결)

# II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 : 박마루 의원)

### 1. 제안이유

- 미세먼지 등으로 인해 시민들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, 그 피해 정도가 급속도로 커짐에 따라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으며, 이로 인해 대기환경뿐만 아니라 실내공기질 관리에 적극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한 상황임.
- 특히 성장기에 있는 아동 및 청소년기의 학생들은 화학물질 침투성 과 미세먼지 흡수율이 높고 상대적으로 유해물질 배출량이 적어 성

인에 비해 취약하기 때문에, 교실 등 학교 실내 공간에서 장시간 지내는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함.

#### 2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, 용어의 정의,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함.(안 제1조~제3조).
-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수립 및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 설 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4조~제6조)
- 실태조사 실시 근거 및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(안 제7조~제9조)

# Ⅲ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김창범)

#### 1.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

- 동 조례안은 2018년 2월 12일 박마루 의원 등 17명의 의원에 의해 의안번호 제2379호로 발의되어 2018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소재 학교에 대한 실내 공기질 관리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써 학생들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된 것입니다.

## 2. 주요 검토의견

### 가. 조례 제정의 배경과 취지에 대한 의견

O 미세먼지는 대기 중에 떠있는 입경 10µm이하인 매우 작은 물질로서

황산염과 질산염 등의 위해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.

○ 지난 2017년에 발표된 보고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2060년에는 대기 오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2010년에 비해 세배 가량 증가할 가 능성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시된 바 있고,¹)

정부는 이에 따라 「대기환경보전법」및 「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」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,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 및 수도권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 등의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 중에 있으며.

서울시에서는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서울시내 시내버스를 CNG버스로 교체하고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및 매연 저감장치 부착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.

또한 지난해 5월에 발표된 '미세먼지 10대 대책'에 따른 대중교통요 금지원, 어린이집과 복지시설의 마스크 및 공기청정기 지원 등의 정책을 시행하는 등 미세먼지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.

○ 한편 서울시교육청도 '2017년 학교 미세먼지 종합관리 대책'을 발표 하고 매년 1회 이상의 학교 공기질 측정 및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단계별 조치사항 등의 지침을 마련하여 미세먼지 문제에 대응하 고 있습니다.

이와 더불어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와 함께 서울시내 126개의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공기정화기를 시범설치·운영하는 등<sup>2)</sup> 학교 내 미세먼지로 인한 유해환경으로부터 학생들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한노력을 진행해나가고 있습니다.

<sup>1) 「2017</sup> 대한민국 OECD환경성과평가」, OECD, 10면 재인용.

<sup>2)</sup> 총예산 :3,200백만원(국고 1,689백만원+특교 1,511백만원)

○ 그러나 이와 같은 정부와 서울시, 서울시교육청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학교내 공기질 개선에 대한 보다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는바,

동 조례안은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실내 공기질을 개선하고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계획을 수립하게 하고 전문기관을 통해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서 적시성과 그 취지면에 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[표-1] 2017년 학교 공기질 측정 결과

|                       | 초등학교 |    |    | 중 학 교 |    |    | 고등학교 |    |    | 기타학교 |    |    | 계     |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--|----|----|-------|----|----|
| 구 분                   | 적합   |    | 초과 | 적합    |    | 초과 | 적합   |    | 초과 | 적합   |    | 초과 | 적합    |    | 초과 |
|                       | 1차   | 최종 | 고ㅛ | 1차    | 최종 | 소피 | 1차   | 최종 | 조피 | 1차   | 최종 | 고피 | 1차    | 최종 | 고파 |
| PM10 (μg/m³)          | 599  | 2  | -  | 382   | 1  | -  | 319  | 2  | -  | 44   | -  | -  | 1,344 | 5  | -  |
| CO <sub>2</sub> (ppm) | 600  | 1  | -  | 383   | -  | -  | 321  | -  | -  | 44   | -  | -  | 1,348 | 1  | -  |
| HCHO (µg/m³)          | 563  | -  | -  | 360   | -  | -  | 313  | -  | -  | 44   | -  | -  | 1,280 | -  | -  |
| 총부유세균(CFU/m³)         | 591  | 10 | -  | 374   | 9  | -  | 319  | 2  | -  | 44   | -  | -  | 1,328 | 21 | -  |
| 낙하세균 (CFU/실)          | 595  | -  | -  | 378   | -  | -  | 312  | 3  | -  | 44   | -  | -  | 1,329 | 3  | -  |
| CO (ppm)              | 598  | -  | -  | 383   | -  | -  | 318  | -  | -  | 44   | -  | -  | 1,343 | -  | -  |
| NO <sub>2</sub> (ppm) | 597  | 1  | -  | 383   | -  | -  | 317  | 1  | -  | 44   | -  | -  | 1,341 | 2  | -  |
| Rn (Bq/m³)            | 593  | 1  | 1  | 379   | -  | -  | 317  | -  | -  | 44   | -  | -  | 1,333 | 1  | 1  |
| TVOC (µg/m³)          | 327  | 11 | -  | 88    | 1  | -  | 78   | 1  | -  | 23   | -  | -  | 516   | 13 | -  |
| 석 면 (개/cc)            | 466  | -  | -  | 302   | -  | -  | 234  | -  | -  | 28   | -  | -  | 1,030 | -  | -  |
| 오 존 (ppm)             | 601  | -  | -  | 383   | -  | -  | 321  | -  | -  | 44   | -  | -  | 1,349 | -  | -  |
| 진드기 (마리/m²)           | 601  | -  | -  | 383   | -  | -  | 321  | -  | -  | 44   | -  | -  | 1,349 | -  | -  |

# [표-2] 초등학교 대상 공기정화장치 시범 설치 및 예산 집행 현황

(단위: 개, 기준 : 2018. 2.)

| 구분            | 동부  | 서부  | 남부  | 북부  | 중부  | 강동<br>송파 | 강서<br>양천 | 강남<br>서초 | 동작<br>관악 | 성동<br>광진 | 성북<br>강북 | 합계    |
|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---|-------|
| 학교수           | 6   | 19  | 13  | 13  | 12  | 16       | 15       | 12       | 6        | 9        | 5        | 126   |
| 학급수           | 193 | 696 | 384 | 389 | 313 | 690      | 467      | 482      | 171      | 230      | 212      | 4,227 |
| 설치교실수         | 233 | 700 | 424 | 403 | 320 | 764      | 689      | 470      | 171      | 429      | 184      | 4,787 |
| 배정예산<br>(백만원) | 150 | 300 | 400 | 400 | 250 | 400      | 450      | 300      | 200      | 200      | 150      | 3,200 |
| 집행예산<br>(백만원) | 150 | 299 | 392 | 393 | 245 | 396      | 450      | 299      | 191      | 181      | 146      | 3,142 |

※ 설치교실수: 일반 학급 외 특별실, 병설유치원 등 포함

#### 나. 주요 조문별 검토

- 1) 조례안의 구성
- 동 조례안은 총 9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안 제1조와 제2 조는 조례안의 목적, 정의를 규정하고 있고, 안 제3조는 교육감의 책무, 안 제4조는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, 안 제5조와 제6조는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 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또한 안 제7조에서는 관리계획에 따른 실태조사를, 안 제8조에서는 행정적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각각 규정하고 있습니다.

- 동 조례안의 전체적인 구성이나 조문 체계가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고 「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」을 준수하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2)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에 관한 의견(안 제4조)
- 안 제4조에서는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교 실내 공기질의 유지·관리 기준 및 개선, 관리체계 등을 내용으로 한 관리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하도록 하고,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.
- 학교 미세먼지 관리와 같이 학생들의 건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정책은 사업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 제점을 지속적으로 관리·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는바, 3년마다 관리 계획을 수립하는 한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토록 한 것은 행정의 연속성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결과의 공개가 행정의 효율을 저해 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안 제4조제3항의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

을 제시하였습니다(체육건강과-3034).

○ 그러나 안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결과의 공개는 평가에 따른 절차적 단계일 뿐, 결과의 비공개가 차년도 추진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.

또한 행정정보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상 법령에 명백한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하는 것이 원칙<sup>3)</sup>이며,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은 학생의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<sup>4)</sup>으로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점,

더욱이 서울시교육청의 의견처럼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을 삭제할 경우 매년 관리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의 평가 또한 삭제되어 관리계획의 수정 보완 없이 3년마다 형식적인 관리 계획이 수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.

- 동 조례안 제4조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감의 추진실적의 평가 및 공개는 법적인 측면과 정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2) 기타 사항에 관한 의견(안 제9조)
- 안 제9조는 동 조례안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교육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이 동 조례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삭제가 필요하다는 의

<sup>3) 「</su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3조(정보공개의 원칙) 공공기관이 보유·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<u>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u>

<sup>4) 「</sup>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제7조(행정정보의 공표 등) ①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<u>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·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공표하고, 이에 따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.</u> 다만,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<sup>1.</sup> 국민생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정책에 관한 정보

<sup>2.</sup> 국가의 시책으로 시행하는 공사(工事) 등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관한 정보

<sup>3.</sup> 예산집행의 내용과 사업평가 결과 등 행정감시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

<sup>4.</sup> 그 밖에 공공기관의 장이 정하는 정보

② 공공기관은 제1항에 규정된 사항 외에도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.

견을 제출하였습니다(체육건강과-3034).

- 그러나 동 조례안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 및 유지·관리를 위한 일정 사항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, 집행부에서는 관련 정책5)을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 시행방안 및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.
- 이는 조례에서 집행기관의 시행방안에 대한 모든 사항을 규정하기에는 한계가 있고, 상황변화에 따른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조례는 규칙에 비해 그 절차와 요건이 상대적으로 엄격하여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있으므로,

동 조례안 제9조는 집행부의 시행방안에 관해 조례의 범위 내에서 자율적인 입법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다는 점 에서 타당한 것으로 생각됩니다.

- Ⅳ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.
- V. 토론요지: 없음.
- Ⅵ. 수정안의 요지 : 해당 없음.
- Ⅲ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재석의원 전원 찬성)
- ₩ . 소수의견 요지 : 없음.
- IX. 기타 필요한 사항: 없음.

<sup>5)</sup> 지난 2017년 4월 10일 서울시교육감은 '2017학년도 학교 미세먼지에 대한 종합 관리 대책'을 발표하면 서, ① 학교 미세먼지 관리기반 구축 ② 미세먼지 관련 교육활동 강화 ③학교 미세먼지 저감 환경 조성 ④ 유관기관 협력체계 강화 등의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다.

#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학교보건법」 제4조에 따라 학교 실내 공기질을 알맞게 유지하고 관리함으로써, 쾌적한 학교 실내환경을 조성하고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증진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  - 1. "학교"란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제2호,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.
  - 2. "학교 실내 공기질"이란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제3조제1항 제3호의2의 교사 안에서의 공기의 질에 대한 유지·관리 기준 내 항목을 말한다.
- 제3조(교육감의 책무) 서울특별시교육감(이하 "교육감"이라 한다)은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및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- 제4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계획 등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질의 개선을 위한 유지·관리 계획(이하 "관리 계획"이라 한다)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한다.
  - ② 관리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.

- 1. 학교 실내 공기질 유지 · 관리 기준 및 지원 방안
- 2.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한 대책
- 3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체계 구축
- 4.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
- 5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교육감은 관리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매년 평가하여,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.
- 제5조(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설치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 공기 질 개선 및 유지·관리 정책의 수립·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 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설치할 수 있다.
  -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.
  - 1. 제4조의 관리 계획 수립ㆍ시행
  - 2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에 대한 성과 평가
  - 3.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
  - 4.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제6조(학교실내공기질개선위원회의 구성·운영)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  - ② 위원은 학교 실내 공기질 담당 5급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, 교육계, 학계, 관련 전문기관, 학부모, 시민사회단체 및 그 밖에 학교 실내 공기질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임명 또는 위촉한다.
  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  - ④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  - ⑤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, 정기회의는 연

-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의 소집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.
- ⑥ 교육감은 참석 위원에게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 위에서 수당 · 여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.
- 제7조(실태조사)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정책 시행 및 관리계획의 수립 등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, 그결과를 제4조에 따른 관리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.
- 제8조(학교 실내 공기질 관리 지원) ① 교육감은 학교 실내공기질 유지 · 관리를 위한 지침을 개발·보급하고, 교육·홍보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.
  - ② 교육감은 학교에 제1항의 지침에 따른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에 필요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- 제9조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.

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